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13호 2021. 2. 10.(수)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733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사천시 조례 제1734호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6
- 사천시 조례 제1735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10
- 사천시 조례 제1736호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22
- 사천시 조례 제1737호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8
- 사천시 조례 제1738호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35
- 사천시 조례 제1739호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70
- 사천시 조례 제1740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72
- 사천시 조례 제1741호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80
- 사천시 조례 제1742호 사천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82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87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98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88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7호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89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조례 제173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를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3조 중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으로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단의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사업 수행”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탁 또는 보조 받는 시민 복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업 등”을 “사업”으로 한다.

2.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4. 보호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제1항 중 “이사장 1명을 포함한”을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로 “감사 2명으로 한다”를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사회”를 “재단에 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 및 이사”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10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사무국장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1] 삭제 <2021. 2. 10.>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2] <신설 2021. 2. 10.>

##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5조2 관련)

항 목	내 용
구 성	1.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
기능 및 역할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 계획 수립 시행 2.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 3.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5.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법률서비스, 자활지원 활동 7.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상담 8.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약물 중독, 자살 등 청소년 위기 상담 9. 청소년안전망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지원 업무 전반
예 산	1. 정부 및 경상남도, 사천시가 출연한 출연금 2. 정부 및 경상남도, 사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3. 기부금품, 수익금 등
임용·복무·보수·자격	1.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름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조례 제173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수난구조 참여자에게 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난구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조 참여자로 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시 관할 이외의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출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조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난구조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 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조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10.>

##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서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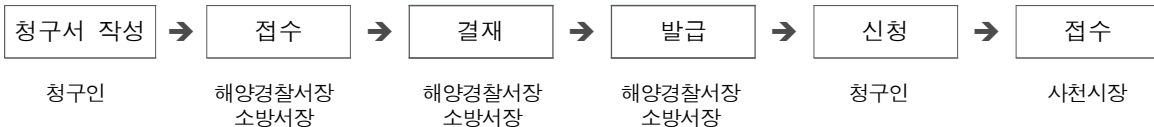
소방서장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 입금통장 사본

### 처리절차



210mm × 297mm(백상지 80g/m<sup>2</sup>)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조례 제173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천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건축물 및” 으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 중 “영 제6조의3” 을 “영 제6조의5” 로 한다.

제21조제3항제8호 중 “「농지법」” 을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으로, “농막” 을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 로 하고, 같은 항에 제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10.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의 관리사 또는 농막

제22조제1항제1호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에 한 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천시”를 각각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건축사를 대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의 건축물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 침수, 산사태, 지진 등 재해·재난 및 주변의 여건 변화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를 “(공개공지등의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으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공개공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각각 “공개공지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별표 6의 공개공지등의 안내판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개공지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확인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조 중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를 “법 제77조의15제3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각 호를”을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로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로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④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2. 10.>

관리번호		-	
------	--	---	--

공개공지등 관리대장

1. 공개공지등 현황

(3쪽 중 제1쪽)

위 치	( 구 동 번지)											
건 물 명			사 용 승 인 일									
건 축 물 기 본 정 보	대 지 면 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륜	%								
	층 수	지상	층	주 용 도								
		지하	층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										
		높이										
		기 타										
	건 축 주			연 락 처								
설 계 자			연 락 처									
시 공 자			연 락 처									
공 개 공 지 등 기 본 정 보	면 적	㎡	유 형									
	조 성 시 설	휴 게 시 설	벤 치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table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margin-left: 1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테이블</td> <td> <input type="checkbox"/>설치( 개) <input type="checkbox"/>미설치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동 기구</td> <td> <input type="checkbox"/>설치( 개) <input type="checkbox"/>미설치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 타 시 설</td> <td>                     조명                     <input type="checkbox"/>설치( 개) <input type="checkbox"/>미설치                     <table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margin-left: 1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시설<sup>2)</sup></td> <td> <input type="checkbox"/>설치( ( 개))                 </td> </tr> </table> </td> </tr> </table>	테이블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운동 기구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기 타 시 설	조명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table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margin-left: 1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시설<sup>2)</sup></td> <td> <input type="checkbox"/>설치( ( 개))                 </td> </tr> </table>	기타시설 <sup>2)</sup>	<input type="checkbox"/> 설치( ( 개))
		테이블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운동 기구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기 타 시 설	조명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table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margin-left: 1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시설<sup>2)</sup></td> <td> <input type="checkbox"/>설치( ( 개))                 </td> </tr> </table>	기타시설 <sup>2)</sup>	<input type="checkbox"/> 설치( ( 개))								
기타시설 <sup>2)</sup>	<input type="checkbox"/> 설치( ( 개))											
안내 표지판	설치 방법	<input type="checkbox"/> 부착형(건물벽, 바다, 시설물에 부착) <input type="checkbox"/> 스탠드형(독립된 표지판)										
감 리 자 <sup>3)</sup>	(인)(사무소명 : )											
공 개 공 지 등 배 치 도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공개공지등 사진<sup>1)</sup>

1) 공개공지등 사진은 전체 조성 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하고, 위반내용 등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확대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3쪽 중 제3쪽)

공개공지등 시설사진 <sup>2)</sup>	
안내표지판(필수)	벤 치
테 이 블	파 고 라
수경시설	조 명
운동기구	기타시설

2) 공개공지등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3] <개정 2021. 2. 10.>

##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아파트 3미터 이상,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경로당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5미터 : 이상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군사 및 교정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경로당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기 타 : 2미터 이상

### 비고

- 1)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을 제외한다.
- 2) 제1호마목과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4] <개정 2021. 2. 10.>

## 공개공지등의 면적 < 제38조제1항 관련 >

대상건축물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면적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 터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5퍼센트	7퍼센트	10퍼센트

# 사 천 시 공 보

제 713 호

[별표 5] 삭제 <2021. 2. 10.>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6] <신설 2021. 2. 10.>

## 공개공지등의 안내판 설치기준(제38조제5항제1호 관련)

### 1. 표기 내용

- 가. 안내문 :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등 (쉼터)입니다.” 등 )
- 나.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등 위치 및 영역 표시
- 다. 범 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 라. 그 밖에 공개공지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

### 2. 설치 규격 : 0.5제곱미터(m<sup>2</sup>) 이상

### 3. 설치 재질 :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고려하여 미관에 지장 없고, 파손의 우려가 적은 금속재 등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조례 제173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신청일로부터” 를 “신청일부터”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협약일로부터” 를 “협약일부터”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 ”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사천시” 를 “사천시 (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취소일로부터” 를 “취소일부터” 로 한다.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방문자센터 및 글램핑 이용료로 한정한다)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으로 감경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주민등록법」에 따른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1】<개정 2021. 2. 10.>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

### 1. 유어장

#### ○ 바다낚시터

(단위:원)

구 분		연 중	비 고
당일이용	성 인	20,000	
	청 소 년	10,000	

※ 청소년 : 8세 이상 ~ 18세 이하, 미취학 아동 무료

#### ○ 펜션형 바다낚시터

(단위:원)

위 치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고
대방	개인	성 인	20,000	20,000	
		청소년	10,000	10,000	
실안 (산분령)	전세	1일/1실 (4인기준/ 최대10인)	220,000	250,000	4명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

#### ① 비수기, 성수기 구분

- 비수기 : 1~6월, 9~12월
- 성수기 : 7~8월

#### ② 퇴실시간 미준수에 따른 추가요금 징수

- 1시간 초과 ~ 3시간 : 20,000원
- 3시간 초과 : 1일 이용료

# 사 천 시 공 보

제 713 호

## 2. 체육시설

### ○ 풋살경기장

(단위:원)

구 분	이용시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1일	2시간	20,000	25,000	야간 조명 사용시 1만원 추가적용

### ○ 요금할인

#### 가. 사천시민 20%

※ 사천시민 : 사천시 주민등록자로서 신분증을 지참한 자

#### 나. 청소년 30%

※ 사천시 소재 초·중·고 재학생 또는 18세 이하 사천시 거주 청소년

※ 사천시 외 거주 청소년은 사천시민 할인을 적용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 3. 숙박시설

(단위:원)

시설구분	이용기준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저도 펜션시설	1박2일, 4인 기준	70,000	100,000	100,000	130,000	A=38.88㎡
일반캠핑	1면/ 14:00 ~ 익일11:00	20,000	25,000	30,000 (7월 ~ 8월)		전기이용료 포함
방문자 센터	1박2일, 4인 기준	100,000		100,000		전기이용료 포함
글램핑	1동/1박2일	80,000	110,000	150,000 (7월 ~ 8월)		전기이용료 포함
주차장	경형 (1,000cc미만)	1,000				
	소형 (1,600cc미만)	2,000				
	중형이상 (1,600cc이상)	3,000				
	승합자동차	5,000				

① 평일과 주말, 성수기 구분

-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휴일 마지막 날
-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7월 ~ 8월(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② 이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③ 퇴실시간 미준수에 따른 추가요금 징수

시설구분	1시간 초과 ~ 2시간	2시간 초과 ~ 4시간	4시간 초과
펜 셴	20,000	40,000	1일 이용료
캠 핑 장	10,000	20,000	1일 이용료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조례 제173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
2.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박람회
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항공우주산업의 공정개선, 투자설비, 성능 검·인정
5.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7. 항공우주관련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 경상남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중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그 밖에 항공우주 관련 기관·단체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과 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보조금 및 시 출연금
2.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1. 사업자의 경영 활동을 위한 융자지원
2. 사업자의 투자 및 설비 구축을 위한 융자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1] <신설 2021. 2. 10.>

##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1. 지원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중소기업 가.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C31311) 나.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C31312) 다. 항공기용부품 제조업(C31322)	
2. 지원범위	경상적 경비 가. 인건비, 사무실 및 공장 임대료, 보건안전관리비 등 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폐수처리비용 등 공공요금	
3. 지원방법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에 따른 지급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조례 제173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4.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사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녹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의 일정구역을 녹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합의를 바탕으로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7.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8. “조경시설”이란 생활 주변의 경관 향상과 주민의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
  -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인공적인 시설물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
2.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도시녹화계획

3.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4.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도시공원 부지활용계약
5.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체결하는 녹화계약
6.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녹지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
7.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운영

## 제2장 도시녹화계획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는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하고, 녹지 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서로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공장 및 산업단지
  6.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7. 교육시설지역
  8.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9.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따라 추진한다.
-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정비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 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 면적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 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 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 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 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 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 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 과제를 도출한다.

4. 도출된 녹화 과제를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 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의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부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 활동)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시장은 녹화운동에 시민참여와 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적정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연계 및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은 “시민과 함께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등 생활에 밀접한 운동을 시작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⑤ 시장은 시민에게 녹화의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소책자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경연 대회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보도 의뢰
5. 도시녹화, 정원가꾸기, 조경수목의 관리 등 시민 교육의 운영
6. 녹화모범사례 경연 대회 및 시상
7. 녹화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12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의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유자와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시장은 해당 토지 안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의 소유자에게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제16조(유지관리)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17조(원상회복)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당 토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4장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8조(부지사용계약의 대상부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을 요청한 부지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

제19조(계약기간) ①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1회로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0조(계약내용)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을 말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부지사용료 및 그 사용료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식재, 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나. 토사붕괴, 사방시설, 수목보호 등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 기존 수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토지소유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마.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조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부지에 대하여 규모, 수림 상태, 접근성,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부지사용계약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용지도와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2항의 토지조서를 기초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22조(공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천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지사용계약의 명칭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2. 부지사용계약의 목적
3. 부지사용계약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계약기간

제23조(부지사용료)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시설의 설치·정비)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1.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한 식재 또는 숲아베기 등 숲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2. 재해방지,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공원시설에 설치하는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환경 훼손이 적고, 철거·이전·복구가 쉽도록 설치
4. 부지사용계약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25조(부지사용료의 지급) 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 ② 토지소유자는 계약 후 1년 단위로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고, 시장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③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그 부지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변경 등) ① 부지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상호 합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시장과 토지소유자는 부지사용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 위반 시의 조치사항)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장 녹화계약

제28조(녹화계약의 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 ब्ल럭, 단지 등을 말한다)의 토지가 있는 지역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등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로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안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29조(녹화계약의 내용) 녹화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고려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가. 녹화의 종류

-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종류를 정할 수 있다.
-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를 말한다)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 안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안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녹화계약지역 안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에 포함할 수 있다.

3) 가급적 경계 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을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 부분에 식재할 수 있다.

##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해충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안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5. 녹화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시장은 도시녹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
  - 나. 묘목이나 초화류 묘종의 무료 배포
  -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 설계 등
  - 라.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 대여
  -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 제공
  -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 상담
  - 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 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는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을 경계로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주민협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회를 둔다.

② 주민협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되, 녹화계약 체결 등을 위해 대표자를 선임한다.

제31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별표 3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제31조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사천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4일 이상 공고하여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재 또는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33조(계약체결)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후 주민협회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34조(계약체결사항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천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35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토지소유자 등이 제33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자체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위반 시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제6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39조(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입장 거부 및 퇴장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41조(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공원 내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42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지원 행사, 거리예술 활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제43조(원상복구 등) ①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 또는 도시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자등”이라 한다)가 각종 시설 및 식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등에게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식물 훼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4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등이 공원을 사용하는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 또는 식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자”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허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점용료의 납부) 허가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공원 및 녹지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제47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의 단축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점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48조(사용허가)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원·녹지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허가 대상자 선정은 시민을 우선으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원·녹지의 사용허가 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공원·녹지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5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공원녹지 관련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공원녹지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과장, 녹지공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

나. 공원, 녹지, 도시계획, 산림 등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다.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원녹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3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1]<신설 2021. 2. 10.>

##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8조 관련)

###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 가. 녹화목표

-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 나. 조성기준

-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특히, 지속성이 필요한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의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 가. 관공서 녹화

- 1) 대상시설로는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센터,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 2) 시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말한다)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 3) 주민자치센터(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4) 지자체의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 5) 또한, 지역 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 2)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녹지 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 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를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다. 역사주변 녹화

- 1) 역사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 2) 역사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 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 3) 역사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 주변 건축물의 이용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현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라. 철로변 녹화

-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 3) 철로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는 철도 승차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 마. 주차장 녹화

-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안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로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지자체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지율을 높인다.
-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 주차위반구역은 대지 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블라드를 설치한다.
-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 7)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 8)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침투율을 극대화되도록 한다.
-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의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공간을 조성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2]<신설 2021. 2. 10.>

##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9조 관련)

###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 가. 녹화의 목표

-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 나. 조성기준

-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희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 라.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도·시·군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 가. 공업지 녹화

-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 나. 상업업무지 녹화

-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 2) 건축물 옥상녹화: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을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 다. 주택지 녹화

-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4) 골목가꾸기: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 5) 담장 및 벽면녹화: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3] <신설 2021. 2. 10.>

## 녹화계약서(제31조제1항 관련)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하고, 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OO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OO시 OO읍·면·동 OO번지 외 OO필지 OOOOm<sup>2</sup>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녹화계약의 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OO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따른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 주택별로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O그루 이상, 관목 O그루 이상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제1호에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년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해당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도 등으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 소유자 등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게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 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OO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을) 사 천 시 장 (인)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4 ] <신설 2021. 2. 10.>

##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45조 관련)

점 용 대 상	점 용 요 율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 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관개용수로(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면 제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면 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온실 등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 건축물의 설치	면 제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면 제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의 설치	면 제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점 용 대 상	점 용 요 율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면 제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1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18. 광고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 (다만, 교외지대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상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할 수 있다.)
19. 상시 영리 행위 ○ 매점 및 건물의 부지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다만, 교외지대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상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할 수 있다.)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점용면적 산출기준

1. 점용면적 산출은 지하, 지상물을 불구하고 평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매설관의 직경(외경)으로 한다.
3. 동일장소에서 다수의 관로 매설시는 전체관으로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4.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시설 등과 관련한 맨홀의 경우는 맨홀에 설치된 시설물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맨홀의 평면적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5] <신설 2021. 2. 10.>

## 식물 훼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43조제3항 관련)

피해 발생의 경우	<p>1. 벌목, 수간 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p> <p>2. 과도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나무비용의 20%+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과도한 가지 훼손: 수관의 2/3 이상 훼손</p> <p>3. 경미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p>
피해 이외 원인 발생의 경우	<p>1.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를 위반할 때는 “피해 발생의 경우”의 산정기준을 적용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p> <p>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p>
비고	<p>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p> <p>2. 나무 비용: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p> <p>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p> <p>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받은 담보금을 환불</p>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조례 제173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장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에 사천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특정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조례 제174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를 “「지방자치  
법」 제136조에 따라”로, “설치·운영에 관한”을 “설치·운영에”로 한  
다.

제3조제2호 중 “본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비와 도의 경비”를 “국비, 도비”로, “재원 등으로”  
를 “등의 재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농기계의 원활한 관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요원을 담당자와 정비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를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기계 정비요원이 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서”를 “농기계 임대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임차 농기계를 사용할 경작지가 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용도는 농업용으로 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 트랙트, 이앙기, 콤바인 제외”를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은 제외한다”로, “1일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징수한다”를 “사용료는 제1항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로부터”를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 규정”을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목적외”를 “목적 외”로, “징수 기준에 의한”을 “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 ① 사용료는 별표 1의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표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10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를 “(사용료의 감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공자로서” 를 “유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 복구 등 시장” 을 “시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를 “따른” 으로, “감면” 을 “감액”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분의1 감면” 을 “2분의 1 감액” 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1] <신설 2021. 2. 10.>

##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1일(8시간 기준) / 단위: 원]

기종	규격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사용료	비고
전기종 및 작업기	자주식 및 부착형	1) 100만원 미만	8,000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0,000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3,000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000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0,000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3,000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7,000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1,000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35,000	
		1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9,000	
		11)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55,000	
		12)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72,000	
		13)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94,000	
		14)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10,000	
		15)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136,000	
		16)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157,000	
		17)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66,000	
		18) 5,000만원 이상	179,000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1일 임대료에서 15퍼센트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콩정선작업기		1포대(40kg 기준): 1,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2] <신설 2021. 2. 10.>

##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제13조제2항 관련)

임대조건 위반사유	사용제한 기간				비 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연락두절 포함)		1회	2회	3회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	2회	3회	4회	5회	
농기계를 무단으로 개조하였을 경우				1회	
농기계 사용 중 파손하여 7일 이내 변상조치 하지 아니한 때			1회	2회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회	2회	
다른 사람의 농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무상, 유상 포함)			1회	2회	
농기계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1회	2회	
농기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1회	2회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회	3회	4회	5회	

※ 사용제한 횟수의 누적합산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 2. 10.>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2. 10.>

##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사천시장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전화(055- /휴대폰 )
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		수량	
부속작업기		수량	
		수량	
		수량	
임대차기간			
임대료			
농기계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 임대차 계약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출고이후 임차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모든 임차인은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농용굴삭기 임차인은 관련 면허증 또는 교육수료증이 있어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년 월 일

임대인 사천시장 인

임차인 (남.여) 인 또는 서명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 055-831-3814 휴대전화 010-8549-3815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조례 제174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6조”를 “제163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천시가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대표자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2. 사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조례 제174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육 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사업
3. 사회 공헌활동 사업
4. 건강증진 사업
5. 문화·여가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신중년층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나.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중년층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4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2. 10.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1-1호 (2021.2.1)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마을경관개선과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호안 정비(전석쌓기: H=2.3m,L=40m)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162-5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1-1호
  - 공사기간 : 2021. 2. 4.~ 2021. 5. 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1. 2. 4.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공고 제2021-198호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10일

# 사 천 시 장

1. 제 목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3. 공고기간 : 2021. 02. 10. ~ 2021. 02. 2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변경등록 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변경등록 사항	변경 등록일
제2021-1호	창신카 닥터	최상욱	사천읍 두량로 29	- 확인검사분야(대행계약) 당초: 동성&대림종합정비 변경: 도동종합자동차정비공업사	2021.02.02.

5. 등록문의 :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055-831-2776)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207호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상표 사용신청 자격 및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통합상표 사용 신청 및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통합상표의 지정, 심의 제외 및 제품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 마. 통합상표 사용기간 및 사용료, 관리 책임 및 검사,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바. 사용중지·정지·지정취소 및 청문에 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2조  
까지)
- 사. 통합상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술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862, FAX : 831-6053)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상표”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별표와 같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중점육성 품목”이란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수준 등이 우수하여 다른 품목보다 먼저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자격)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지유통정책에 따라 공동선별하거나 공동출하 또는 공동계산하는 방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품

제4조(품질기준) ① 통합상표의 사용 제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따른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품목인 경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심의)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상표 사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통합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통합상표 사용 지정 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상표의 사용·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2. 통합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
3. 통합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상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사천시의회 의원, 생산 및 출하 기관의 관계자, 생산자단체 관계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농업인 및 유통종사자 등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상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통합상표의 사용 지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심의 결과 통합상표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13조(심의 제외)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에서 연구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
2. 산지통합마케팅조직(농산물을 품목별로 통합하여 판매·마케팅을 전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담하는 조직을 말한다)에서 출하하는 농산물

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4조(사용제품의 공개)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상표의 사용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이 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5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통합상표의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제3조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제4조에 따른 품질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용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통합상표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6조(사용의 표시 등) ①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에 통합상표의 승인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 제품 관련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② 포장박스, 스티커 등 포장재의 제작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상표의 관리에 관한 책임과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단체 또는 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회원 또는 해당 기업의 직원 중 1명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관리책임자는 해당 제품(단체일 경우 전체 회원의 제품을 말한다)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품의 검사) ① 시장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정을 요청받은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신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실태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품질관리책임자에게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③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이 변질·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구매자에게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중지 및 사용정지) ①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통합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조사공무원이 해당 제품에 대해 선별, 출하, 유통 등을 조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품질기준의 유지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정지 처분을 받은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제21조(사용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중단, 표준출하규격 폐지 등으로 인해 해당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승인받지 않은 제품에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전국도매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반기 2회 이상 농약을 검출한 경우
5. 전국도매시장으로부터 품질, 표시사항 등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적격 제품으로 통보받은 횟수가 반기 2회 이상인 경우
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통합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7.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8.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9.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통합상표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통합상표가 표기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고,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할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수 없다.

제22조(청문)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사용 지정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통합상표 사용자에게 해당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표]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제2조제1호 관련)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신 청 자			주품목	사용신청량 (매)	서명·날인	비고
주 소	성 명	성별				

### ○ 필수 이행사항

- 통합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농산물표준규격출하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한다.
- 사용등급은 농산물표준규격상의 “상” 품에만 사용하고, 내용물의 품질이상 등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환불한다.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이행조건 미 준수시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 및 통합상표를 표시한 포장재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지 제2호서식]

## 통합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		성별		생년 월일		전화	
	조직명							
	주소							
지정내역	지정번호							
	품목명							
	지정기간							
연장내역	연장기간							
	사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지 제3호서식]

##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

- 지정번호 :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지정품목 :
- 지정기간 : 20 . . . ~ 20 . . . ( 년간)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별지 제5호서식]

## 통합상표 사용 중지 신고서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		성별		생년 월일		전화	
	조직명							
	주소							
지정내역	지정번호							
	품목명							
	지정기간							
사유	중지기간							
	사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 관 련 법 규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3호

## □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3.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5. 마을 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마을어장개발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6.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시설 설비 지원사업
9.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학술연구, 심포지움, 국내·외 교육훈련 등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
10.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불량 농수산물의 시장 격리를 위한 지원 사업
11. 사천몰(쇼핑몰)전자상거래,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2. 농수산물 직거래, 로컬 푸드 활성화 사업
13. 농수산물 규격출하 및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14. 농산물우수관리(GAP)활성화 지원사업
1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